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87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한병도・황운하・진선미

장철민 • 이춘석 • 이해식

박용갑 • 이워택 • 정태호

위성곤 · 신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 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

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 24호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즉결심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 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①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	
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	
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	
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	
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23.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즉결심판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